

第 14 回 臨時會

2005. 3. 22(火)

— 계룡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—

檢 討 報 告

鷄 龍 市 議 會

專門委員 申 東 熙

檢 討 報 告

□ 改定背景

- 지방세법 및 광주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이 개정됨으로써 개정된 상위법규에 부합 되도록 정비하고
- 그동안 조례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관계 법령 및 감면 취지에 맞도록 보완 하려는 것임

□ 主要内容

-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관한 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를 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관한 법률에 의한 5·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 변경 함(안 제2조 제2항)
- 반복적인 국가 유공자·5·18민주화운동 부상자·고엽제후유의증 환자를 국가 유공자 등으로 간결하게 표기 함(안 제2조 제2항)
-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대상을 명확하게 함(안 제3조 제1항)
-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포함 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 함(안 제9조 제1항 제3호)
- 7~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 함(안 제14조의 4)
-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규정을 신설하여 감면방식을 명확하게 함(안 보칙 제30조의 2)

□ 檢討意見

- 본 개정 조례안은, 광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고,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이 폐지되는 등 관련 상위법이 변경 됨에 따라 이에 부합 되도록 정비하고
- 7~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량에 대한 자동차세가 일시적으로 대폭 인상되는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경감조항을 신설하는 등
- 관계법령 및 감면 취지에 맞게 보완 하려는 것으로 개정되는 내용이 상위법에 저촉 되거나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됨